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염동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2.

발의자 : 염동열 · 이완영 · 김명연
나경원 · 황영철 · 홍문종
김성원 · 박명재 · 홍문표
정태옥 · 홍철호 · 한선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적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.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

임(안 제2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등).

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 제목 중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”를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4항에”로 한다.

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·시간·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41조(과태료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9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의 교육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 및 제4항에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5의2.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</p>

	<p><u>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</u> <u>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</u> <u>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</u> <u>자</u></p>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